

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

2026년 8월 13일
안양시 재무관

【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시 처분사항】

- 본 공사는 현장 **사전단속(실태조사)** 대상공사로, **계약체결**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업자에 대하여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(기술능력, 자본금, 시설·장비·사무실 등)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(단,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)으로 실태조사하고, 조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,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,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
 2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「지방계약법」제30조의2에 따라 **낙찰자 결정 취소**
 3.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<별표1>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른 **수의계약 배제 처분**
 4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95조 또는 「형법」제315조에 따른 처벌

1. 견적에 부치는 사항

- 가. 공 사 명: 명학대교 교량상판 LMC포장 보수공사
나. 위 치: 안양시 명학대교 일원
다. 공사개요: 시방서 및 설계설명서 참조(▶ LMC 교면포장 A=175m²)
 ※ **공사 관련 자료는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청 도로과 (☎031-8045-2424)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.**
라. 공사기간: 착공일로부터 **29일간**
마. 공사금액

(단위: 원)

추정금액	기초금액			관급자재	
	계	추정가격	부가가치세	도급자설치	관급자설치
99,000,000	99,000,000	90,000,000	9,000,000	-	-

※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,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.

바. 공사구분: 전문공사(포장공사업)

사. 본 공사는 아래 표와 같이 **신기술(특허공법)이 적용**되는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우리시와 **신기술(특허) 보유자** 간에 체결한 **신기술(특허공법) 사용협약서**의 내용 및 **신기술(특허공법)이 포함된 공사내용** 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, **낙찰자는 착공전 반드시 신기술.특허공법 사용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** 공사의 이행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」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특허권의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특허번호	신기술(특허공법) 명칭	보유자
제10-0835657호	초속경 시멘트 조성물(DS-CON)	주식회사 다숨이앤지

※ 도급사는 신기술(특허공법) 시공부분에 대하여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기술보유자에게 **하도급**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술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**계약금액에서 추후 감액** 조정하여야 합니다.

아. **A값: 3,172,281원**

※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으니,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건적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,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자.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

- 1) 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(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) 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89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」,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,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, 「건설기술진흥법」,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에 따릅니다.
- 2)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**조정없이** 반영하여야 합니다.

■ A값							(단위 : 원)
A값	국민건강 보험료	국민연금 보험료	노인장기요양 보험료	퇴직 공제부금	산업안전 보건관리비	품질 관리비	안전 관리비
3,172,281	-	-	-	-	1,653,044	493,908	1,025,329

- 3)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**사후정산** 하여야 합니다.

가)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」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.

※ **상용근로자(현장대리인 포함)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**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

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.

- 나) **산업안전보건관리비** 계상 및 사용기준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고용노동부 고시)」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.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,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,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다) **안전관리비** 계상 및 사용기준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,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(국토교통부 고시)」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.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,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.
- 라) **품질관리비** 계상 및 사용기준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,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.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,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[별표6]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.

차. 공사 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

- 1)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「**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**」 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「**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**」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2)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(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,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)의 노무비 청구내역(근로자 개인별 성명, 임금 및 연락처 등)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3)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(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)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,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.
- 4) 계약상대자는 '나'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의 노무비 지급내역(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)을 제출해야 합니다.

2. 현장설명: 생략(설계서 열람으로 갈음)

3. 견적제출 방법: 총액입찰, 전자입찰, 지역제한, 적격심사 제외대상

4. 견적제출 참가자격

- 가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(입찰의 참가자격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(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)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
- 나.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(낙찰자는 계약체결일)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(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에 관련

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)가 계속하여 **안양시 내에 있는 자**

다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**지반조성·포장공사업(주력분야: 포장공사)**을 등록하고 당해 업종의 **등록기준(사무실, 기술인력, 자본금, 장비)**을 충족하는 자

※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된 건설사업자는 사전단속을 위하여 우리시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실태조사에 응하여야 합니다.

※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(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) 제2항에 따라 공인 회계사·세무사·전문 경영진단기관이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(실질자본금)에 대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. (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)

라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'조세포탈 등을 한 자'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,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.

※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와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·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,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.

5. 입찰보증금: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.

6.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

가. 견적서 제출기간: **2026. 8. 18.(화) 10:00 ~ 2026. 8. 20.(목) 10:00**

나. 개찰일시 및 장소: **2026. 8. 20.(목) 11:00** 안양시 만안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

※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**2026. 8. 20.(목) 16:00**까지 다시 입찰을 실시하고, 같은 날 **17:00** 이후에 개찰합니다.

(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)

다.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

1)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.

※ 이 입찰은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,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(공동인증서 제외)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.

2)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,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3)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'**공통 - 전자문서함관리 - 전자문서함목록 - 전자**

문서함 - 보낸문서 - 보낸입찰서보기'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- ※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,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(☎ 1588-0800)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,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.

7.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

- 가.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$\pm 3\%$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,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추천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천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.
- 나.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**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퇴직공제부금비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(이하 "국민연금보험료 등(A값)")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.745%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**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[별표1]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.
- 다.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.
- 라. 1순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(행정안전부예규)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.

8. 견적제출 무효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.

9. 「하도급지킴이」(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) 이용에 관한 사항

- 가. 이 공사는 「하도급지킴이」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.
- 나.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'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'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'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'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.
 - ※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「하도급지킴이」를 이용(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)하여야 하며, 하수급인(장비·자재업체 포함)과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「하도급지킴이」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
- 라. 또한 하도급 대금, 노무비, 장비·자재대금을 「하도급지킴이」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.

마. 「하도급지킴이」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'나라장터시스템-하도급 지킴이-시스템 이용 안내(업체)'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0. 하도급 관련사항

- 가.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,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.
- 나.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다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, 전기공사법, 정보통신공사법,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(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),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.
- 라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1. 「건설기계 임대차 계약」 관련사항

- 가.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(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)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,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(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·건설업자·건설기계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)를 발급받아 **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- 나. 계약상대자(하수급인 포함)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**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**합니다.
- 다. 계약상대자(원도급자)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위 '가','나'의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.

12.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

- 가.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.
- 나. 낙찰자(계약상대자)는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<붙임1> 「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」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.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·해지할 수 있으며, 모든 책임은 입찰(견적)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.

13.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'안전·보건확보 의무' 준수

- 가.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

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
《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》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- 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나. 입찰 참가시에는 <붙임2>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,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4. 청렴계약이행 준수

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5. 기타

가.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설계도서 및 시방서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」(행정안전부예규)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(행정안전부예규), 「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」(조달청고시),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」(조달청고시),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」(조달청고시), 기타 입찰·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 공고문을 구성하는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
나.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, 입찰일(낙찰자는 계약체결일)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.

다.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 및 사업자등록증(개인) 상 대표자(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)의 성명,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추진 시 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.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마. 계약상대자는 안양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 권장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(직불합의서 작성)
- 2)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
- 3)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

바.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(E-9)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(H-2)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사. 낙찰자(계약상대자)는 전자계약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(G2B)를 통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- 아.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(납세의 의무)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,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(부가가치세 제외)의 1.5%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.
- 자.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(<http://anyang.go.kr>)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,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차.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'입찰정보-공사-기초금액'과 '개찰결과'에 게재됩니다.
- 카.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,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(비위)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(감사실 ☎ 031-8045-2898)

안양시 홈페이지 > 전자민원 > 신고센터 > 공직자부조리신고

타. 문의처

- ▶ 입찰공고,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: 안양시 회계과(☎ 031-8045-5534)
- ▶ 설계내역서,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: 안양시 도로과(☎ 031-8045-2424)
- ▶ 건설업종 실태조사 관련: 안양시 도로과(☎ 031-8045-5694)
- ▶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: 조달청 콜센터(☎ 1588-0800)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

본인은 귀 기관의 ()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.

「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」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.

: 예 ()

: 아니오 ()

(업체명)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,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,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을 제출합니다.

주 소:

업체명:

대표자: (인)